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8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2.
3. 회부연월일 : 2025.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으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손자녀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2. (생략)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u>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u> ② ~ ⑦ (생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다만,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u> ② ~ ⑦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등록의무자로 하여금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와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제4조제1항).

등록대상 재산에 등록의무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가족 간 차명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등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둔 것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나 외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회문화적 통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산등록 대상 친족 범위 관련 해외사례>

국가	재산등록의무자	친족범위		
		배우자	자녀	조부모·손자녀
한 국	정무직, 4급 이상(상당)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분야 실무직 공직자	○	○ (혼인한 딸 제외)	○ (외증조부모·외조부모·외손자녀·외증손자녀 제외)
			다만,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미 국	대통령·부통령, GS-15등급(최고등급) 이상 공무원, 의회의원, 판사 등	○	△ (21세 미만 부양자녀)	X
일 본	장관	○	△ (부양자녀)	X

캐나다	장·차관, 장관 보좌관 등	X	X	X
프랑스	대통령·의원 등 선출직, 고위 공직자 등	△ (배우자와의 동재산만 신고)	X	X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손자녀를 예외 규정에서 삭제하여 이들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과거 호주제에 기반하여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남성,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중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고 재산 관리에 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를 경우 양성평등과 상충되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 조문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재산등록 대상의 확대를 통해 부정한 재산 은닉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규제적 조치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침해되는 사익과 재산 은닉 가능성의 방지 및 축소를 통한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공익적 기대효과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및 외손자녀 등 외가에 대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향이 크지 않다는 사회문화적 통념 내지 현상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들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설정한 것인만큼 현 시점에서 이 중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등 입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¹⁾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한 여성 자녀 등을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재산등록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에 한하여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재산등록을 위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는 친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점²⁾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개정안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손자녀의 경우 현행법과 동일하게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유지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향이 낮다는 사회문화적 인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2) 법률 개정 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친족 수 추정치('2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손자녀·아들·딸 인원으로 추산)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16,033명, 외손자녀 432명 등 총 16,465명

문 의 처
02)6788-5342